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06호

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(압구정특별계획구역③ 등 8건)

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강남구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③ 등 8건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5일
서울특별시
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가. 해제기한 연장구역

연번	구역명	위치	구역면적(㎡)
1	압구정특별계획구역③	압구정동 369-1번지 일대	365,883
2	압구정특별계획구역④	압구정동 481번지 일대	118,859
3	압구정특별계획구역⑤	압구정동 490번지 일대	78,990
4	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구역	잠원동 73번지	85,331
5	신반포25차아파트 재건축구역	잠원동 61-1번지	10,630
6	삼호가든5차아파트 재건축구역	반포동 30-1번지	13,692
7	한양2차아파트 재건축구역	송파동 151번지 일대	54,386
8	신동아아파트 재건축구역	서빙고동 241-21번지 일대	57,387

※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(안)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과정에서 ‘압구정특별계획구역③~⑤’의 구역범위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구역 변경이 수반될 수 있음

나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: 2022.03.02.까지

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부터 2년간)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－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토지 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,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 연장함

3. 관련세부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(02-2133-7137), 강남구 재건축사업과(02-3423-6063), 서초구 주거개선과(02-2155-7341), 송파구 재건축사업과(02-2147-2888), 용산구 주택과(02-2199-7363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